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보다 많은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일부 완화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고령자복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 호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2. 14. ~ 3. 28., 2022. 5. 10. ~ 5. 17.)

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0항 중 “공공주택사업자”를 “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(이하 “공공주택사업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7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중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
1. 입주자 자격: 세대구성원 모두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. 다만,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2. 거주기간: 30년 이내일 것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“국민임대주택”을 “통합공공임대주택”으로 하

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국민임대주택”을 “통합공공임대주택”으로, “별표 4 제2호사목”을 “별표 5의2 제1호나목2), 같은 표 제3호마목 및 같은 표 제5호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입주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3호라목을 준용한다.

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본문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, “국민임대주택”을 “통합공공임대주택”으로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

제19조제7항(중전의 제6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별표 6의2제2호마목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23조제3항 중 “제17조의2”를 “제17조의2제1항·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6의3 제1호가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단지 내”를 “최초 입주자 모집 시에는 단지 내”로 하고, 같은 목에 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) 제4순위: 별표 4 제1호, 별표 5 제1호가목2)나) 또는 별표 5의2 제1호나목3)에 해당하는 사람

별표 6의3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
·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
지원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호수의
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할 수 있
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를
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) ① ~ ⑨ (생략) ⑩ <u>공공주택사업자와 영 제24조 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는 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계약 체결일의 토지 가격과 조성된 토지 공급계약 체결일의 토지가격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.</u> ⑪ (생략)	제7조(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<u>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(이하 “공공주택사업자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7조의2(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7조의2(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중 영 제6조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</u>

<신 설>

제19조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) ① (생략)

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(이하 “신혼희망타운주택”이라 한다)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.

1. (생략)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급할 것
가. (생략)

정할 수 있다.

1. 입주자 자격: 세대구성원 모두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. 다만,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2. 거주기간: 30년 이내일 것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9조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되, 공공분양주택이 단지 전체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

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사목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. 이 경우 거주기간은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

<신 설>

④ (생 략)

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동·호수를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. 다만,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

나. ----- 통합공공임대주택 -----

③ -----
----- 통합공공임대주택-----
----- 별표 5의2 제1호나목2), 같은 표 제3호마목 및 같은 표 제5호-----
--. 이 경우 입주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3호라목을 준용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⑥ -----
-- 제5항-----

----- 통합공공임대주택 -----

---. -----

시행령」 제6조제1항제1호가목
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를
선정하기 전에 동·호수를 결정
할 수 있다.

⑥ **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**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단서 신설>

제23조(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) ①·② (생략)

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제14조, 제15조,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.

⑦ -----

----- . 다만, 별표 6의2
제2호마목에 따라 선정된 경우
에는 그렇지 않다.

제23조(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 제17조의2제1항 · 제2항 ---
-----.